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의견수렴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인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질량안전법>과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 규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해관이 기능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입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 유관 제품 제외, 이하 동일)의 생산·경영 활동

(2)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제 3 조 수출입식품의 안전작업은 안전제일의 원칙을 견지하고 예방위주, 리스크 관리, 전체 과정 통제, 국제적으로 공동 다스리는 것, 또한 과학적이고 엄밀하게, 고효율이며 간편하게, 조화스러우며 통일하게, 공개적이며 투명한 현대화관리제도를 실행한다.

제 4 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경영하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과 유관 나라 또는 국제조직의 협의서,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식품수출입 활동을 종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출입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사회와 대중에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5 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의 안전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 지방 해관은 해당 관할지역내 수출입식품의 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해관이 수입식품의 합격평정을 실시하고 수출식품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해관은 정보화수단을 활용하여 수출입식품의 안전감독관리 수평을 제고한다.

제 7 조 해관은 기업신용관리의 유관 규정을 의거로 수출입식품의 생산·경영자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해관은 수출입식품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법률과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지식의 보급 업무를 시작하여 소비자의 수출입식품 유과 식품안전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향상시킨다.

해관은 식품안전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구, 국내외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 등과의 교류와 협작을 강화하고 수출입식품안전의 국제 공동 관리 국면을 개척한다.

제 9 조 해관에서 수출입식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맡은 인원은 유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업무 진행 중 책임감 있게 직책을 다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수입

제 10 조 수입식품은 중국의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의 위생행정부에서 한시적 적용하기로 한 유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시적 적용하기로 한 표준이 공포되기 전,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아직 없는 식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신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 37 조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의 신식품원료 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가공 후 모두 다시 수출에 쓰일 수입 식품 원료에 대해 해관은 다시 수출 할 목적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서에 따라 검사 진행을 요구할 수 있고 검역요구는 기존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2 조 해관은 수출입상품검사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한다.

수입식품의 합격평정 사항은 아래 몇가지를 포함하지면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평가와 심사, 해외생산기업(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 이하 해외생산기업이라 한다)의 등록, 수출입업체(對중국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 이하 수출입업체라고 한다)의 비안과 합격보증, 입국 동식물검역심사, 수출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증명서 등 동봉한 합격증명 검사, 해관신고서와 증명서의 심사, 현장 심사, 샘플링검사, 수입과 판매기록 검사 및 이 중 여러 항목의 조합.

제 13 조 해관총서는 對중국 식품 수출하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과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와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 요구를 확정한다.

제 14 조 아래 각 하 해관총서는 對중국 식품수출 해외 나라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1) 해외 나라(지역)가 처음으로 모 유형(종)의 식품을 對중국 수출할 것을 신청했다
- (2) 해외 나라(지역)의 식품안전, 동식물검역정책, 법률법규, 조직기구 등에 큰 조정이 있었다
- (3) 해외 나라(지역) 주요 담당 부서가 對중국 수출 모 유형(종)의 식품의 주요 수입검사검역요구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 (4) 해외 나라(지역)에서 중대한 동식물역병 또는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 (5) 해관이 對중국 수출한 식품 중에서 엄중한 문제를 발견하고 동식물역병 또는 식품안전 우려가 있다고 판단
- (6) 기타 평가 또는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제 15 조 해외 나라(지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평가와 심사는 주로 아래 내용의 평가, 확인을 포함한다:

- (1) 식품안전, 동식물역병 유관 법률, 법규;
- (2)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직기구;
- (3) 동식물역병의 예방과 통제
- (4) 질병 유발 미생물, 농약, 동물용 약품과 오염물 등에 관한 관리와 통제
- (5) 식품생산가공, 운송, 입고 보관 단계의 안전, 위생 통제
- (6) 수출식품의 안전감독관리
- (7) 식품안전 예방, 추적과 리콜 시스템
- (8) 경보와 비상시스템
- (9) 기술지탱능력
- (10) 기타 동식물역병, 식품안전 유관 상황

제 16 조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모집하여 서면 심사, 영상 심사, 현장 심사 등 형식 및 조합하여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해관총서가 모집한 전문가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는데 심사내용은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과 유효성이 포함된다. 신청자료의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신청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더러 부족한 정보 또는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심사 마친 후, 전문가는 서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18 조 해관총서는 영상 심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해관총서가 모집한 전문가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유효성, 식품안전 상황 등 내용을 온라인 영상 등 방식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은 영상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지원해야 한다.

영상심사 마친 후 전문가는 영상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영상 심사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 및 유관 기업에 영상 심사 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해관총서는 현장 심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해관총서가 모집한 전문가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유효성, 식품안전 상황 등을 현장심사한다.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은 현장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지원해야 한다.

현장 심사 마친 후 전문가는 현장 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장 심사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 및 유관 기업에 현장 심사 시 발견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평가 진행 중,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가 아래 상황이 존재한다면 평가와 심사를 종료하고 해관총서에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 고지한다:

- (1) 설문지를 받은 후 12 개월 내에 피드백 및 유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 (2) 해관총서의 보충 정보와 자료 요청을 받고 3 개월 내에 요구에 따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다
- (3) 중대한 동식물역병 유관 또는 식품안전 사건이 돌발
- (4) 중국측 심사인원의 영상 심사 또는 현장 심사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다
- (5)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이 자발적으로 평가와 심사 종료를 신청한다
- (6)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기타 상황

제 21 조 해관총서가 해외국가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평가와 심사 진행 중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확정한다면 평가와 심사의 다음 절차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통제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평가와 심사를 종료한다.

평가와 심사를 마친 후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 평가와 심사 결론을 통보한다. 평가와 심사를 통과한 국가(지역) 리스트는 해관총서에서 취합하여 게시한다.

제 22 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유관 규정을 근거로 對중국 식품 수출 해외 생산업체에 대해 등록과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등록 된 업체 리스트를 공포한다.

제 23 조 對중국 식품 수출하려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해관총서에 비안해야 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공상등록 소재지 해관에 비안되어 있어야 한다.

해관총서가 식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업체 비안 리스트의 공포를 책임진다.

제 24 조 식품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세우고 아래 내용을 중점으로 심사해야 한다:

- (1)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이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조치 정황
- (2)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가 對중국 수출 식품이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다는 보증 정황

식품 수입업체는 심사 통과한 해외 식품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식품을 수입해야 한다.

해관은 법에 따라 식품수입업체의 심사업무 실시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식품수입업체의 유관 자료 열람 또는 유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수입업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유관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 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식품을 유관 법률, 법규 요구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제 26 조 해관은 법에 따라 검역심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심사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수입업체는 무역계약서 또는 협의서 체결 전 입국동식물 검역허가를 신청 및 받아놓아야 한다.

해관총서는 법률, 법규의 유관 규정 및 국무원 유관 부서에서 발포한 입국금지물품 리스트에 따라 검역심사가 필요한 수입식품 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 27 조 식품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응해 해관은 수입식품의 수출 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해관은 사전검사의 결과에 따라, 사전검사 합격한 수입식품은 통관에 간편을 줄 수 있다.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범위, 절차와 요구는 해관총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28 조 지정 항구 수입 요구가 있는 수입식품은 해관총서가 지정한 항구로 수입해야 한다. 지정 항구 수입이 필요한 식품목록, 지정 항구 및 지정한 감독관리 장소의 건설요구와 리스트는 해관총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29 조 지정 감독관리 장소의 건설은 지역 경제발전과 국제무역발전의 수요, 항구의 자연조건과 교통물류의 기초 상황, 수입안전 보장능력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건설계획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에서 제출한다.

지정 감독관리 장소 소재지 인민정부는 해당 식품안전 보장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지정 감독관리 장소의 기초능력건설 최적화 업무시스템을 세우고 항구 자원을 취합하여 항구 각 연합검사 부서와 관리부서를 조율해 지정 감독관리 장소의 관리배합시스템을 세우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수입식품의 지정 감독관리 장소의 건설 및 관리는 해관총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식품수입업체 및 대리인은 법률, 법규 규정 및 해관총서의 유관 규정을 따르고 아래 동봉한 증명서류로 해관에 신고한다:

- (1) 감독관리 증명문서
- (2) 입국 동식품 검역허가증 등 승인 문서
- (3) 합격 증명 자료
- (4) 수입식품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비안,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비안,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등 기업의 자격증명문서

신고 요구와 동봉 증명 문서의 제출방식은 해관총서에서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 32조 제 31 조 제 1 조목의 제(1)항에서 규정한 감독관리 증명문서는 아래 몇가지를 포함한다:

- (1) 보건식품의 등록증서 또는 비안 증빙자료,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등록증서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의 배합 등록증서 등 특수 식품의 필수 감독관리 증명문서
- (2)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증서
- (3) 식품 수입에 있어서 획득해야 하는 기타 감독관리 증명문서

제 33조 제 31 조 제 1 조목 제(3)항에서 규정한 합격 증명자료는 아래 몇가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 (1) 부합성성명 (符合性声明) 또는 합격 보증서
- (2) 실험실 검사보고서
- (3) 수출국(지역) 주요 담당 부서 또는 수권기구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 (4) 식품 수입에 있어서 갖고 있어야 할 기타 합격 증명서류

수출국(지역) 주요 담당 부서 또는 수권 기구에서 발행한 증명서류가 필수인 것, 그 해당 양식, 내용 및 발행 방식은 해관총서가 수출국(지역) 주요 담당 부서와 상의하고 결정한다.

제 34조 식품수입업체, 위탁 받은 해관신고기업은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과 규범성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봉한 증명 문서의 원본 검사를 필요한다면 식품수입업체, 위탁 받은 해관신고기업이 해관의 요구에 따라 보충 신고를 해야 한다.

제 35 조 해관은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등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의 내용은 아래 몇가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 (1) 운송도구, 저장 장소가 안전위생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 (2) 컨테이너 번호, 쉘 넘버가 신고한 정보 및 동봉한 증명자료와 부합하는 지, 화물의 실제 상황과 신고한 정보가 부합하는 지
- (3) 동식물원성식품, 포장물 및 까는 재료가 <수출입동식물검역실시조례> 제 22 조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 (4) 내외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 독성과 유해물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였는 지, 오염, 파손, 침수, 침투 등이 있는지
- (5) 내외포장의 라벨, 표식 및 설명서가 법률, 법규의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총서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
- (6) 내외포장에 표시한 내용이 신고한 정보 및 동봉한 증명자료와 부합하는 지
- (7) 식품의 관능적 성상이 부패변질, 유지 산패, 곰팡이 또는 벌레, 오염, 이물질 혼입, 잡질 또는 가짜 물질 혼입, 냄새가 수상, 분말이 덩어리 형태로, 수상한 분층, 혈빙, 얼음 또는 서리 과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생충 포낭, 일상생활의 해충 등 이상이 있는지
- (8) 냉동·냉장식품은 그 신선함의 정도, 중심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리변화가 있는지, 냉동·냉장 체인의 온도 컨트롤 설비 작동이 정상적인지, 온도 체크 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검사한다. 필요 시, 증자시험(蒸煮試驗)을 진행해도 된다.

제 36 조 해관총서는 연도 국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계획과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특별 계획을 제정한다. 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랜덤으로 샘플 채취, 검사, 처치 등을 실시한다. 직속해관(直属海關)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계획과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특별 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관할구역의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그리고 관할수역의 수입식품 안전상황에 따라 보충계획을 제정해 해관총서에 비안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소속해관(隶属海关)은 매년 연도 국가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계획,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특별 계획과 소속 직속해관 수입식품감독 샘플링검사 보충계획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 37 조 해관은 감독 샘플링검사 계획 등 유관 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감독 샘플링검사를 진행한다.

제 38 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식은 중국의 법률, 법규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규정상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중국어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신선, 냉동 육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내외포장에 원산국(지역), 제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를 표명해야 한다. 외포장에는 중국어로 규격, 생산지역(주/성/시까지 자세하게), 목적지, 생산날짜, 유통기한, 저장 온도 등 내용을 표명해야 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표명해야 하는 동시에 수출국가(지역)의 정부 공식 검사검역 표기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수산품을 수입하는 것은 내외포장에 견고하고 뚜렷하며 알아 보기 쉬운 중국어와 영어로 아래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상품명칭과 학명, 규격, 생산날짜, 로트 번호와저장조건, 생산방식(바다포획, 담수포획, 양식), 생산지역(바다포획해역, 담수포획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또는 지역), 생산가공기업(포획선, 가공선 포함) 명칭 및 번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목적지라고 표명해야 한다.

수입 보건식품, 특수선식용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해야지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에 특수표기의 규정이 있는 것은 해당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9 조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한후 해관이 지정한 또는 인정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동이 필요하다면 해관의 허락을 받고 해관이 요구한 필수 안전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 또는 인정 받은 감독관리 장소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지정 또는 인정 받은 요구 및 절차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대중 산적(大宗散装) 수입식품은 해관총서가 요구한 화물을 내리는 항구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 40 조 수입식품의 합격평정이 불합격인 것은 해관에서 불합격증명을 발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의 불합격과 연계되는 것은 해관에서 당사자더러 소각 또는 퇴운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고지한다. 기타 항목 불합격한 것은 해관의 감독하에 지정 시간내 기술처리를 완성해 다시 검사의 결과가 합격이라면 판매, 사용 할 수 있다. 식품수입업체가 지정 시간내에 기술처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해관은 식품수입업체더러 소각 또는 퇴운을 요구한다.

제 41 조 식품수입업체는 식품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세우고 서면 또는 전산의 방식으로 식품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자, 생산 혹은 수입 로트번호, 유효기간, 해외수출업체와 구매자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납품날짜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 및 증빙의 보관기한은 식품 유효기간 만료 후 6 개월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관 기한은 2 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수입식품이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또는 식품안전문제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식품수입업체는 <식품안전법>제 63조 제 2 항, 제 3 항과 제 94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수입,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고 시장에 판매 중인

식품을 리콜한다. 동시에 유관 시장경영자와 소비자를 통지하고 식품의 리콜과 처리 상황을 소재지 해관에 보고한다.

규정에 따라 리콜 또는 판매, 사용 정지를 처치하지 않는 식품수입업체는 <식품안전법>제 63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리콜 또는 판매,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식품 수출

제 43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출 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 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 조약이나 협정에 조건이 있는 경우, 국제 조약과 협정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상술 조건이 없다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 44 조 해관은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감독관리는 아래 몇 가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 수출식품 원료 재배·양식장의 비안, 수출식품 생산업체의 비안, 업체 재심사, 증명서류 심사, 현장검사, 샘플링검사 감독, 항구 샘플링검사, 해외 통보 재심사 및 여러 항목의 조합.

제 45 조 수출식품 원료 재배·양식장은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하고 비안되어 있지 않은 재배·양식장의 원료는 수출식품의 가공 원료로 쓰이면 안 된다. 수출식품 원료의 재배·양식장 비안의 구체적인 요구와 절차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하고 공포한다. 수출식품원료 재배·양식장 비안이 필요한 수출식품 목록 및 비안을 취득한 원료 재배·양식장 리스트는 해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공포한다.

홍콩, 마카오 공급용 가공 원료 야채는 반드시 비안한 기지의 것이어야 하지만 해관총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소품종 야채는 제외.

제 46 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재배·양식장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비안전한 재배·양식장의 감독관리는 서면 심사, 현장 심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비안전한 재배·양식장은 거기에서 생산한 매 로트의 원료에게 공급 증명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47 조 비안전한 재배장은 아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 (1)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재배용지의 소지를 증명하는 서류
- (2) 토지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게 연결되어 있고 주위에 천연적인 또는 인공 격리대(망)이 있으며 본 지방 해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 토지면적의 요구에 부합한다
- (3) 대기, 토양과 관개용수가 국가 유관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고 재배지 및 주변에 재배 중인 원료의 품질 안전을 영향 할 오염원이 없다
- (4) 농약 등을 책임지는 농업투입품 관리의 인원이 있고 독립적인 농업투입품의 보관장소가 있다. 농업투입품은 중국 또는 수입국가(지역) 유관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한다.
- (5) 완전한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세우고 조직기구, 농업투입품 사용관리제도, 역병 감측제도, 유독, 유해물질의 통제제도, 생산과 추적기록제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6) 생산규모에 해당하고 식품보호 기초지식을 지닌 전문 또는 파트타임 관리인원을 배치한다.
- (7)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 48 조 비안전 양식장은 아래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 (1) 동물방역 조건 합격 증명을 취득, 또는 어업 행정 주요 담당 부서의 양식 허가를 취득
- (2) 주변 500 미터 내에 가금, 가축 양식장, 병원, 화학공장, 쓰레기장 등 오염원이 없고 외계 환경과 격리되어 있는 설비가 있으며 내부 환경, 위생이 양호

(3) 구조가 합리적이고 위생방역의 요구에 부합하며 입수, 배수의 교차오염을 피한다

(4) 독립적으로 배치된 약물과 사료 창고가 있고 창고는 청결과 건조를 유지하며 통풍이 양호하고 전문적인 인원이 입출고 기록을 책임진다

(5) 유효적인 동물위생방역과 양식관리체계를 세우고 일상위생관리제도, 역병방치제도, 약품관리제도, 사료와 첨가제 사용 관리제도, 활 동물 출입장 관리제도, 생산과 추적기록제도 등을 포함하고 양식장 품질안전 각 항목 관리기록의 진실함, 완전함, 추적 가능함을 보장해야 하며 양식장내 보관, 사용하는 사료와 동물약품 등 농업투입품이 수입국가(지역)의 규정에 부합하다.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 49 조 수출식품업체는 국내 식품, 식용농산품 유관 생산·경영 자질을 취득해야 한다.

제 50 조 수출식품업체는 공상 등록된 소재지 해관에 비안해야 한다. 수출식품업체 비안은 해관총서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51 조 수출국가(지역)가 거기로 식품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을 요구한다면 수출식품업체가 공상 등록 소재지 해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대외적으로 추천한다. 해관은 기업신용, 감독관리 등 상황을 취합하여 대외 추천의 업무를 추진한다. 대외 추천 등록 유관 절차와 요구는 해관총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 52 조 수출식품업체는 완전하고 추적가능한 식품안전위생 통제체계를 세우고 식품안전위생 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지속적으로 중국 유관 법률법규, 수출식품생산업체 안전위생 요구, 수입국가(지역) 유관 법률법규 요구 및 유관 국제 조약, 협정 요구 부합을 보증해야 한다.

수출식품업체는 원료 재배·양식장 심사제도, 공급업체 평가제도, 화물 입고 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제도, 출하검사 기록제도, 수출식품 동향 기록제도와 불합격식품 처치 기록제도 등을 세워야 한다. 유관 기록은 진실해야 하고 보존기한은 식품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관 기한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수출식품생산업체는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수방식이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제 54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운수포장에 생산업체 비안번호, 제품명칭, 생산 로트 번호와 생산날짜를 표명해야 한다. 해관은 발행한 증명서류에 상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 또는 계약서 상 특수 요구가 있다면 제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증하는 전제 하에 직속해관을 동의할 거쳐 수출식품생산업체는 표기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55 조 해관은 관할지역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안전 위생 통제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감독검사는 서면 심사, 현장 심사 등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수출식품 해외 통보 재검사, 샘플링검사 감독, 현장 검사 등 업무과 결합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 56 조 수출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체는 법률, 법규와 해관총서 규정대로 생산지 또는 화물 모집 지역 해관에 해관 신고 전 감독관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57 조 생산지 또는 화물 모집지역 해관은 식품 수출 해관 신고 전 감독관리 신청을 수리한 후 검사검역 실시가 필요한 수출식품에 대해 유관 검사검역 관리규정과 요구에 따라 현장검사와 샘플링검사 감독을 실시한다.

제 58 조 해관총서는 연도 국가 수출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계획을 제정한다. 직속해관(直属海关)은 수출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계획의 요구에 따라,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관할구역의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그리고 관할수역의 수출식품 안전상황에 따라 보충계획을 제정해 해관총서에 비안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소속해관(隶属海关)은 매년 연도 국가 수출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검사 계획과 소속 직속해관 수출식품감독 샘플링검사 보충 계획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 59 조 해관은 샘플링검사 감독 등 유관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랜덤으로 샘플을 취하고 해당 자질이 있는 실험실에 보내 시험을 진행한다.

제 60 조 수출식품이 수출요구에 부합하다면 해관은 중국과 유관 나라의 협의서, 수입국가(지역)에서 요구에 따라 증명서류를 발행한다. 수출식품의 수입국가(지역)간 증명서류의 양식과 내용에 새로운 요구가 있다면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고 직속해관이 증서에 대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식품이 수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관은 불합격증명을 발행한다. 법에 따라 기술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면 해관의 감독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해야 하고 합격 후에 수출을 허가한다. 법적으로 기술처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 61 조 수출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은 해관 수출입화물 해관 신고 관리 규정의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 해관 신고 감독관리의 결론, 유관 허가 증명서류 및 봉동한 증명서류, 유관 상업 증빙 및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수출 증명서류로 해관에 신고를 한다.

제 62 조 항구 해관은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의 요구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항구검사를 실시하고 항구심사 불합격인 것은 수출불가하다

제 63 조 해관총서는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구가 통보한 중국 수출식품의 리스크 경보 정보 및 기타 식품안전정보 심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리스크 평판의 기초상에 리스크 관리 원칙을 의거로 샘플링 비율 조정, 대외 등록 추천의 정지, 수출 정지 또는 금지 등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제 4 장 감독관리

제 64 조 해관총서는 <식품안전법> 제 100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품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해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관리제도를 세운다. 각 급 해관은 관할구역 내 및 상급기구가 지정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수집과 정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지방 정부, 유관 부처, 기구와 기업에 통보한다. 통보한 정보가 기타 지역과 연관이 있다고 제때에 해당 지역 해관에도 통보한다.

수집하고 취합한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는 <식품안전법> 제 100 조 규정한 내용 외에 해외 식품기술성 무역조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제 65 조 해관은 수집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에 대해 리스크 연구, 평판을 진행하고 연구, 평판 결론을 내어 기능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한다. 리스크 연구, 평판 결론이 관할구역만 연관된다면 제때에 관할구역 내에서 실시할 리스크 경보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시스템적이고 전국적인 것은 제때에 해관총서에 알려야 하고 해관총서는 수집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및 직속해관이 알린 연구, 평판의 결론에 대해 리스크 평가, 예측하고 취해야 할 리스크 통제 조치를 확정한다.

제 66 조 국내, 해외 발생한 식품안전사건 또는 역병이 수출입식품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수출입식품에 엄중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했을 때 직속해관은 제때에 해관총서에 알려야 한다. 해관총서는 상황에 따라 리스크 경보를 내고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소비자에 리스크 경시를 통보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리스크 경시를 통보할 수 있고 각 급 해관은 리스크 경시 통보에 따라 수출입식품에 대해 가중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7 조 해관총서는 연도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을 제정하고 국가 식품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의 일부분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입식품 중 식원성질병, 식품오염과 유해 요소의 감측 수치 및 유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직속해관은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이 제정한 관할구역 실시방안에 따라, 그리고 관할구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이 외에 관할구역의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을 제정하고 해관총서에 비안 후 실시할 수 있다. 소속해관은 연도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과 소속 직속해관의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감측계획의 실시를 책임진다.

제 68 조 해관은 본 방법의 제 2 장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증명서류 심사, 현장검사와 샘플링검사 감독 등 주요 내용의 일상 감독관리를 한다.

리스크 평가의 기초 상 해관은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해외 식품생산기업 또는 국가(지역) 對중국 식품에 감독관리 강화, 자동 압류 등을 포함한 가중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9 조 해외에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 국경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해관이 수입식품 감독관리 진행 중 불합격 수입식품 또는 기타 식품안전문제 발견 시, 해관총서와 직속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 비율, 샘플링 감독 비율 제고 등 통제조치를 포함한 강화 된 감독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70 조 강화된 감독관리 실시 중 다시 불합격 수입식품 발견 시, 또는 수입식품에 중대한 안전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관총서와 직속해관은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 압류를 실시 할 수 있다.

자동 압류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수입업체는 로트별로 해관에 자질이 있는 검사기구가 발행한 식품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식품수입업체가 제공한 검사보고에 대해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의 허가없이 자동 압류된 식품은 지정 장소에서 인도할 수 없다.

제 71 조 아래 상황 존재 시, 해관총서는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해외 식품생산 업체 또는 국가(지역)의 對중국 수출 식품에 수입 정지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수출국가(지역)에 중대한 동식물역병 발생, 또는 식품안전상황에 큰 변화가 발행하여 對중국 수출 식품의 안전을 유효적으로 보증할 수 없다
- (2) 자동 압류를 실시한 수입식품이 다시 안전, 건강, 환경보호 유관 항목 불합격 발견
- (3)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심하게 중국 유관 법률, 법규를 위반
- (4) 기타 정보에 따라 모 해외 식품생산업체 또는 모 국가(지역) 수입식품에 엄청난 큰 안전 우려가 있다

제 72 조 해관총서는 해외 발생한 식품안전사건 근거로 중국 국경내 식품안전에 끼칠 영향, 또는 수입식품 중에서 발견한 식품안전문제의 엄중 정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 52 조에서 규정한 임이의 통제 조치를 적용하는지를 직접 결정 할 수 있다.

제 73 조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가 통제가능 수평까지 내려갔을 때 해관총서와 직속해관은 리스크 경보를 해제할 수 있고 아래 방식을 통해 원래의 가중 통제 조치, 수입 정지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강화 된 감독관리를 실시중인 식품이 규정한 시간, 규정한 강화 감독관리 로트 내에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고 리스크 평가 기초 상 강화된 감독관리를 해제시킬 수 있다.

(2) 자동 압류를 실시한 식품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부합한다면 리스크 평가 기초 상 자동 압류를 해제시킬 수 있다:

① 수출국가(지역)이 예방조치를 취했고 해관총서의 리스크 평가가 충분히 식품안전을 보장 할 수 있고 동식물역병 리스크를 통제 할 수 있다

② 자동 압류 실시일로부터 규정한 시간, 규정한 자동 압류 로트 내에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다

(3) 수출 정지 또는 금지를 실시한 식품이 수출국가(지역) 주요 담당 부서에서 리스크 통제 조치를 이미 취했고 해관총서의 평가결과 요구에 부합한다면 수입 정지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다. 수입을 회복한 식품에 대해 해관총서는 상황에 따라 자동 압류, 감독관리 강화 또는 일반적인 감독관리를 취하는 지를 평가한다.

제 74 조 해관총서는 국제 통용 수법을 참고해 해외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 국경내 끼칠 영향, 또는 평가 후 통제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직접 리스크 경보 통보 또는 리스크 경보 공고를 발포하고 통제조치를 취 할 수 있다. 동시에 제때에 유관 정보와 자료를 수집, 보충하여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통제조치를 조정한다.

제 75 조 해관총서는 전국 수출입식품 안전 돌발사건 비상처리 예안을 제정하고 직속해관은 관할구역 수출입식품 안전 돌발사건 비상처리 예안을 제정한다.

발생한 수출입식품 안전 돌발사건 및 작동한 해당 등급의 비상대응에 대해 해당한 처치 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따라 비상조치 조정, 종료한다.

제 76 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아래 조치로 수출입식품 경영자가 본 방법 준수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 심사와 사찰할 권리가 있다:

- (1) 생산·경영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
- (2) 생산·경영 중인 식품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진행
- (3) 유관 계약서, 증빙, 장부 및 기타 유관자료의 검열과 코피
- (4)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증거 또는 안전 우려 및 위법으로 생산·경영한다는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을 차압, 압류
- (5) 위법으로 생산·경영을 재개하는 장소의 차압

제 77 조 식품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 23 조에 따라 비안 진행 시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 유효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수입업체는 업체명칭, 업체성질, 업체주소, 법정대표인, 연락인과 연락방식, 비안 식품 종류 등 비안 내용 변경 시 변경 발효일로부터 30 일 내에 변경 증명서류 등 유관자료로 공상 등록지 해관에 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이 식품수입업체가 비안 신청 중 잘못 된 비안 정보를 제공 또는 비안내용이 변경했는데 제때에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더러 규정한 기한내에서 정돈을 명할 수 있다. 정돈을 거부한다면 해당 식품수입업체의 수입 신고 수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78 조 경유 식품은 해관총서가 경유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경유 식품이 경유 기간 해관의 승인없이 포장을 뜯거나 운수도구에서 하역해서는 안 된다.

경유 식품은 규정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제 79 조 해관은 수출식품 감독관리 시 발견한 안전문제 또는 수출식품이 해외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원산지 또는 화물 모집 지역 해관이 해당 지방 정부와 상급 정부 식품안전 주요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해관은 유관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기한내에 정돈을 요구할 수 있고 정돈기간 수출 신고, <수출식품 생산업체 비안증명>의 철회 또는 말소 등을 수리하지 않는 등 조치 및 행정처벌을 취할 수 있다.

제 80 조 식품수입업체가 해관의 검사결관에 이의가 있을 때 <수출입상품 재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실험실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지만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하다면 해관은 재검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 (1) 검사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 초과
- (2) 예비용 재검사 샘플이 유통기한 초과
- (3) 기타 원인으로 예비용 샘플이 재검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다

제 5 장 법률 책임

제 81 조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법률, 법규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했지만 범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관은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미만 일 경우, 동시에 5 만위안이상, 10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이상 일 경우, 동시에 화물가치의 10 배이상, 20 배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82 조 아직 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식품생산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수입한 것은 해관에서 수입 정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금액의 10%이상, 50%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을 취득했지만 검사결과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관총서에서 기한내 정돈을 요구한다. 정돈이 규정한 요구에 미달 또는 기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상황이 엄중하다면 해당 등록을 철회한다.

제 83 조 식품수입업체 비안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변경수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것은 해관이 경고한다.

제 84 조 검역심사수속절차를 거쳐야 할 동식물원성 식품을 수입하는데 법에 따라검역심사수속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심사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것은 해관이 5000 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85 조 식품수입업체가 아직 해외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세우지 않고 준수하지 않은 것은 해관이 개정을 요구한다. 개정을 거부한다면 5000 위안이상, 5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것은 경영 정지를 요구한다.

제 86 조 식품수입업체가 아직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세우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관이 개정을 요구하고 경고한다. 개정을 거부한다면 5000 위안이상, 5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것은 경영 정지를 요구한다.

제 87 조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연관 불합격 수입식품인데 식품수입업체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소각 또는 퇴근의 조치를 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범죄에 도달하지 않을 때 해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미만인 것은 5 만위안이상,

10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이상인 것은 화물가치 금액의 10 배이상, 20 배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가중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다시 한번 불합격 항목 발견 시, 윗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제 88 조 해관이 예포장식품 수입의 감독관리 중 수입 예포장식품이 중국어 라벨 미부착 또는 수입 예포장식품의 중국어라벨이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식품수입업체가 해관의 소각, 퇴운 또는 기술처리의 요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해관은 경고를 하거나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89 조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수입식품을 해관 지정 또는 인정한 감독관리 장소에서 이동했을 때 해관은 개정을 요구하고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90 조 식품수입업체가 유관 주요 담당 부서로부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의거한 수입식품 리콜조치를 명 받았는데 리콜을 거부한다면 범죄에 도달하지 않을 때 해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미만인 것은 5 만위안이상, 10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화물가치 금액이 만위안이상인 것은 화물가치 금액의 10 배이상, 20 배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91 조 아래 위법행위 중 <식품안전법> 제 129 조 제 1 조목 제(3)항에서 규정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출한 식품’ 행위에 속한 것은 해관이 <식품안전법> 제 124 조에서 규정한대로 처벌한다:

(1) 해관의 감독 및 샘플링검사를 거쳐 이미 검사검역증서를 취득한 수출식품과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2) 불량 혹은 가짜 제품이 혼합되거나 가짜를 진짜로 속이거나 불량 제품을 우량 제품으로 기만한 수출식품을 요건에 부합한 수출식품으로 사칭하여 수출한 경우

- (3) 비안하지 않은 수출식품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출한 경우
- (4) 등록 추천을 받지 못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출한 경우
- (5) 수출식품 생산업체가 규정에 따라 비안한 출처의 원료를 생산한 수출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6) 수출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 123 조, 제 124 조, 제 125 조, 제 126 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해당 식품이 이미 수출되었지만 수입국가(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 92 조 본 방법의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와 제 34 조의 규정대로 사실대로 해관 신고를 하지 않고 해관의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를 회피하는 것은 해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 금액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수출입 화물 발송인, 수화인이 규정에 따라 해관 신고 기업에 위탁한 해관 신고 사항의 진실한 상황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항 제 1 조목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탁인에 대해 위 조목대로 처벌한다.

해관 신고 기업이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 실수로 본 조항 제 1 조목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관은 이 6 개월이내의 해관 신고 업무 또는 업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하다면 이의 해관 신고 등록을 철회하고 이의 해관 신고 종업자격을 취소하며 해관 신고 업체에 2 만위안이상, 20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처 할 수 있다.

제 93 조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증명서류, 인감, 표기, 봉인을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위조, 변조한 수출입식품검사검역증명서를 사용하여 범죄에 도달했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관이 개정을 요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금액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 94 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 해관 및 스태프가 기타 위법행위를 행했을 때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5 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가 밀수혐의 있을 때 법률에 따라 법적책임을 물고 해관이 가중한 감독관리, 이의 해관신고 수리 정지 등 통제 조치를 취한다.

제 6 장 부칙

제 96 조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를 출입하는 식품 및 수출식품시장의 구매, 변경 소금액과 상호시장무역 식품의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 97 조 택배, 우편물, 국제 온라인 판매와 여객 휴대방식의 수출입식품은 해관총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8 조 수출입용 샘플, 선물, 증정품, 전시품, 지원 등 비무역용 식품, 국경 소액 무역 식품, 수입용 면세 경영 식품, 영사관 자체, 공용 식품, 수출용 영사관, 중국 기업 주재원 등 자체 소비용 식품은 해관총서 해당 유관 규정에 따라 처한다.

제 99 조 본 방법에서의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對중국 국경내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 수출식품 생산업체, 수출업체 및 유관 인원 등을 포함한다.

제 100 조 수출입 한약재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수출입 식품첨가제, 식품 유관 제품의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총서의 유고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본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유관 법률, 행정법규, 해관규정, 공고와 규범성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01 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 102 조 본 방법은 2020 년*월*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입출경 한약재 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 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홍콩, 마카오 공급 야채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등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